

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 
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송파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입니다.

오늘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5월 30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」 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말하며 가족, 친구, 이웃 등과 교류가 단절되고, 사회적 역할상실에 따른 외로움과 고립감 등을 크게 느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

최근 핵가족화 및 생활문화의 변화로 인해 1인 생활을 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외부로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발견된 경우들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.

2020년 전국 기준 혼자사는 노인가구는 166만 1천 가구이며(여성 비율71.9%) 전체 노인가구의 35.1%를 차지하고 있고 「노인복지법」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보완하여 독거노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.

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! 그리고 보건복지 위원 여러분!

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